Deloitte Insights

July 2026

심화되는 조세 복잡성, 기업의 세무 대응 우선순위

2026 글로벌 조세정책 서베이

Deloitte Global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개요: 서베이로 본 2026년 기업 세무환경의 핵심 변화 03

01. 조세 투명성과 보고 05

02. 세무 디지털화 07

03. 근로와 자산에 대한 과세 11

04. 국제조세 개혁 14

05. 지속가능성 19

06. 통상정책 및 관세 22

07. 결론 23

08. 연구 개요 24

개요: 서베이로 본 2026년 기업 세무환경의 핵심 변화

2026 글로벌 조세정책 서베이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정책 변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서베이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28개 관할권에서 연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의 세무·재무 부문 고위 리더 1,01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글로벌 조세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 주제 3개를 선택했다.

그림 1.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세 정책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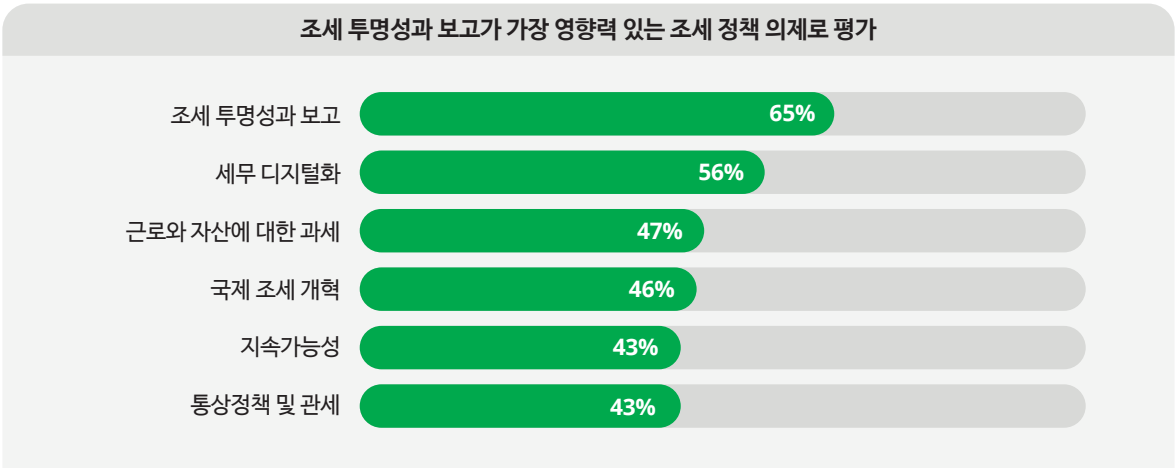

서베이 주요 시사점

- ☑ 조세 투명성과 보고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나타났으며, 복잡성과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 ☑ 글로벌최저한세*의 초점은 정책 합의에서 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와 세무당국의 실행 준비로 이동하고 있다.
- ☑ 기업은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전체 세부담보다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 ☑ 조세 인센티브의 활용 가능성과 실질적 가치는 모든 정책 주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됐다.
- ☑ 기업들은 국경 간 인력 이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 운영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 ☑ 세무 디지털화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
- ☑ 통상·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공급망 민첩성, 시장 다변화,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조세 투명성과 보고는 이번 서베이가 다룬 모든 지역과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4년과 2025년 글로벌 서베이 결과와도 일치한다.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일 요인은 컴플라이언스·행정·보고 요건의 증가였다. 글로벌최저한세를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꼽은 기업에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림 2. 세무 조직의 주요 운영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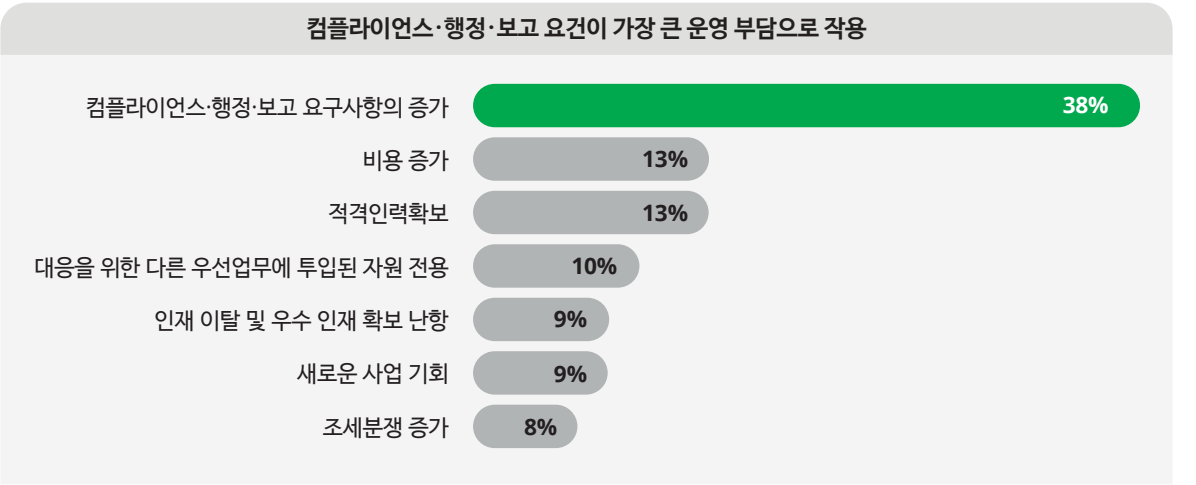

기업이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는 전체 세부담보다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조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꼽았으며, 전체 세부담을 선택한 응답자는 52%였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낮은 세율뿐 아니라 제도의 방향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올해 서베이에서는 데이터 관련 이슈가 핵심 관심사로 부상했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수집·검증과 보안 관련 의무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정책의 편익과 컴플라이언스 비용·부담 간 균형을 점검하는 것이다.
> 이는 이번 보고서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공통 과제다.
>
> **아만다 티켈** (Amanda Tickel)
> 딜로이트 글로벌 세무·통상정책 리더

01. 조세 투명성과 보고

조세 투명성과 보고는 3년 연속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 꼽혔다. 응답자의 84%는 향후 2~3년 동안 대외 조세 투명성 공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 투명성 공시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

대외 공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공개 국가별보고(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PCbCR)**와 같은 국제적 제도다. 이와 함께 다른 조세 투명성 요건과 자발적 공시도 대외 공시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모든 요인이 대외 공시 확대 흐름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EU가 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 **공개 국가별보고(PCbCR):** 다국적기업이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등 주요 세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그림 3. 조세 투명성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공시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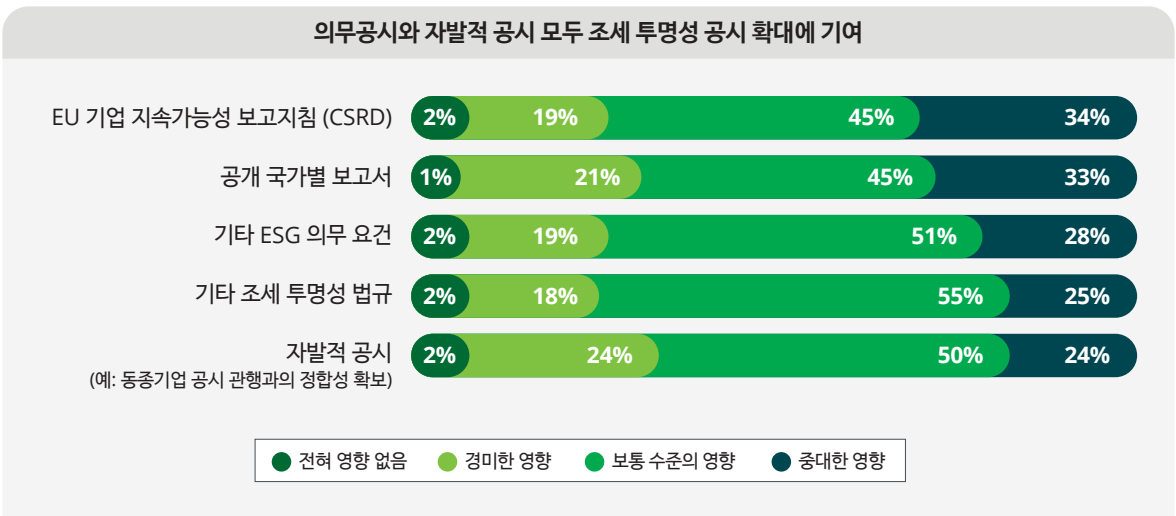

조세 투명성 전략의 실행

조세 투명성 전략 실행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내부 거버넌스와 관리체계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특히 세무 거버넌스와 통제체계를 대외 공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됐다. 고위 경영진의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검증 절차를 확보하는 것도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보고 프로세스 자체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고, 관련 요건과 기준에 대한 이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평가됐다.

그림 4. 조세 투명성 전략 실행 시 주요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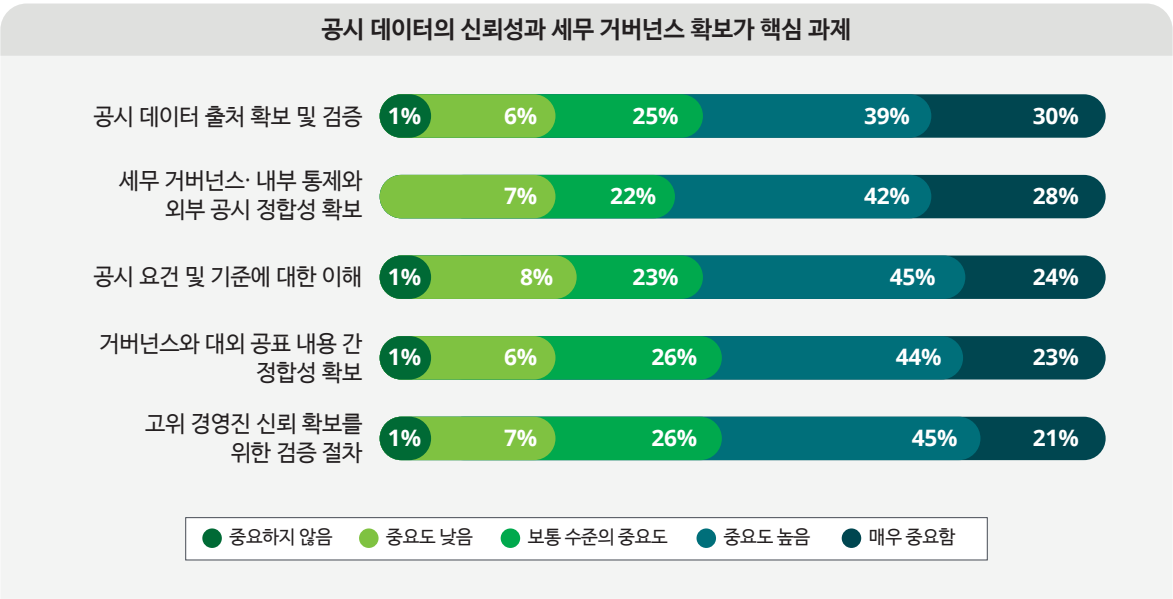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조세 투명성 전략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을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응답자의 40%가 대외 조세 지속가능성·투명성 보고에 대해 자발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배경이다. 이와 별도로 응답자의 42%는 외부 검증 의무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서베이 결과는 각 요인의 중요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는 각국의 제도 이행 방식과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가이드라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차이 자체가 또 다른 복잡성과 부담을 낳는다. 데이터 수집·검증의 어려움과 관련 요건·기준을 이해하는 과제는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조세 투명성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데이터 수집·검증'과 '관련 요건·기준에 대한 이해'라는 기본적인 과제가 여전히 핵심 이슈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 프로세스와 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 그 과정에서 공시·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 절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
> **팀 헤일** (Tim Hayle)
> 세무 담당 이사, 딜로이트 영국

02. 세무 디지털화

이번 서베이는 디지털화를 통해 세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주목했다. AI의 영향, 디지털 세무행정, 전자세금계산서의 확산이다.

AI의 영향

응답자의 대부분은 AI 기반 세무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정확성 향상을 가장 큰 기대 효과로 꼽았다. 다만 이러한 효과에는 상당한 도입 비용과 복잡성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AI 세무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의 주요 기대효과와 도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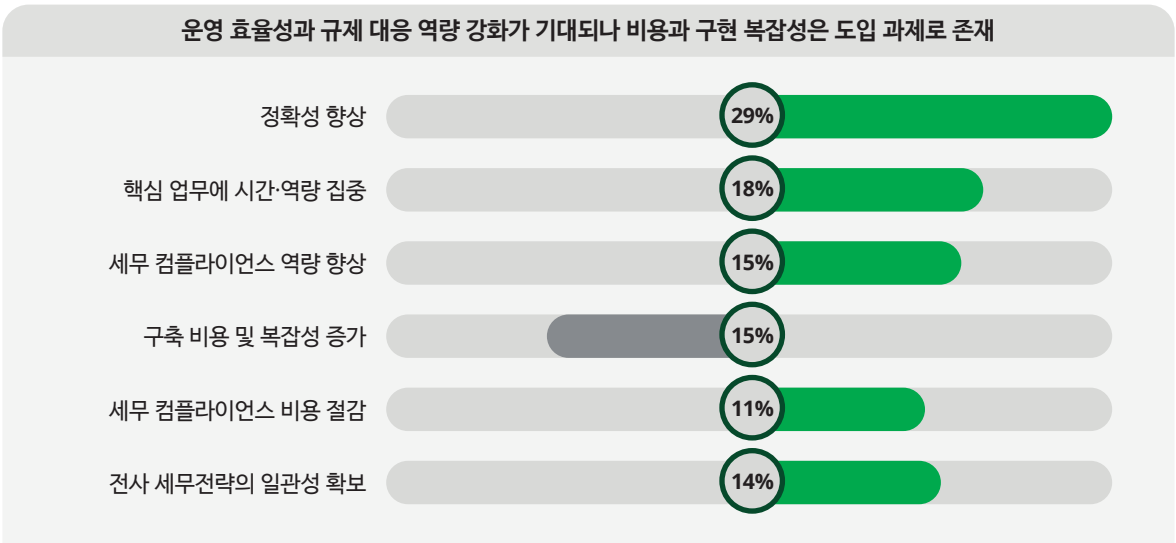

세무조사에서는 AI의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조사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보 제출 요청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응답자는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했다.

그림 6. AI가 세무조사에 미치는 주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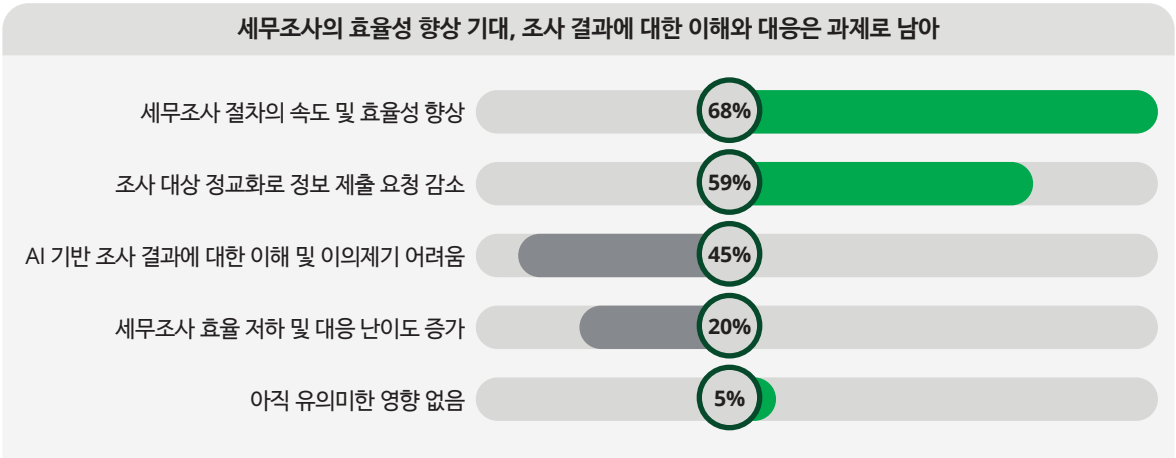

디지털 세무행정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서베이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세무행정 개념인 세무행정 3.0(Tax Administration 3.0, TA3)*의 도입 진전과 기대 효과에 주목했다. 응답자의 60%는 자국에서 TA3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으며, 27%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TA3가 가져올 실제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가 엇갈렸다.

* **세무행정 3.0(TA3):** 기업의 업무 시스템과 세무행정을 디지털로 연결해 세금 신고와 납부가 보다 자동화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세대 세무행정 체계

그림 7. 세무행정 3.0의 기대효과와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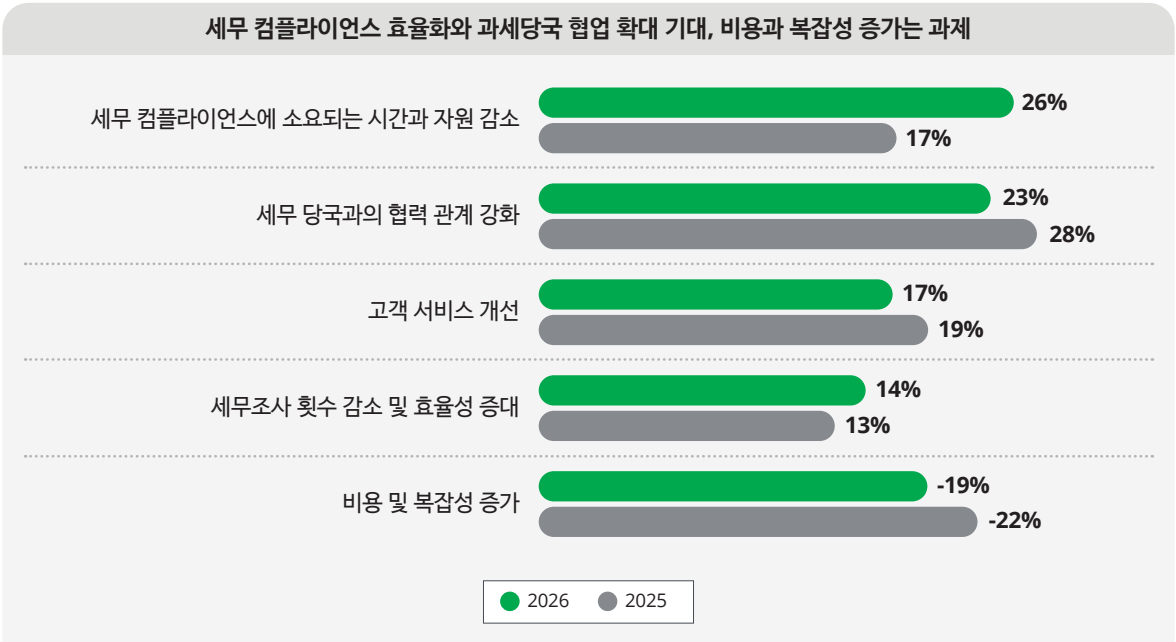

이는 TA3의 개념과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여전히 있음을 시사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확대

2025년 서베이에서는 세무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낮아진 반면, 복잡성 증가에 대한 우려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졌다. 컴플라이언스 간소화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줄어든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주요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을 꼽은 응답자는 늘어났다.

그림 8.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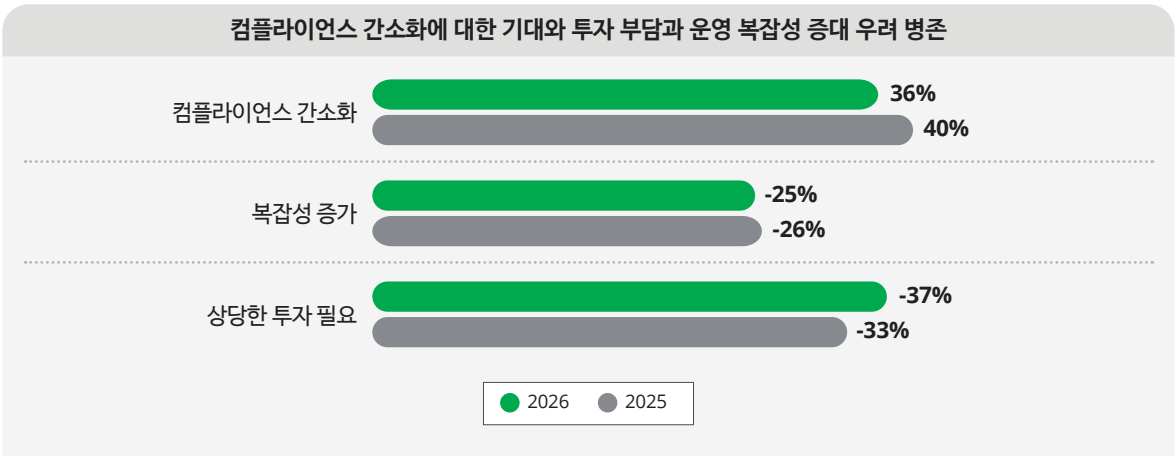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확대와 관련해 주요 우려 요인을 묻자, 응답자들은 데이터 보안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그림 9. 전자세금계산서 확대의 주요 우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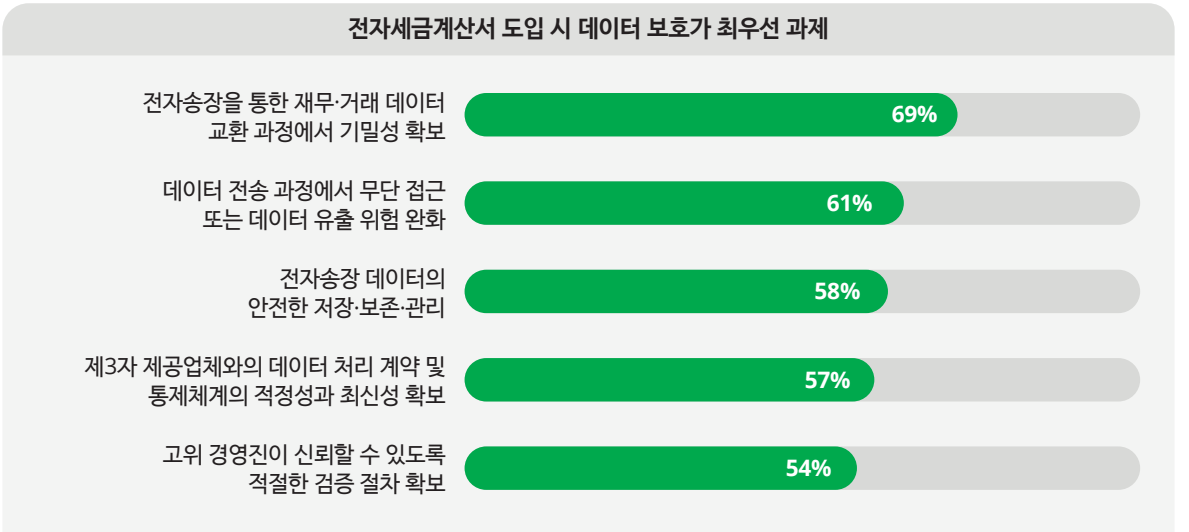

> 디지털화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과 복잡성이 따른다. 앞으로 관련 정책은 기업의 도입·운영 비용과 복잡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술 자체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디지털화의 효과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
> **헤일리 맥켈비** (Hayley McKelvey)
> 최고 AI 책임자(Chief AI Officer), 딜로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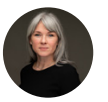

03. 근로와 자산에 대한 과세

이 주제는 전년보다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응답자의 47%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최근에는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Model Tax Convention and Commentary)* 개정 등 글로벌 차원의 정책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Model Tax Convention and Commentary):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권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OECD의 표준 조세조약과 해설

세무 및 규제

국경 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인세 이슈가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꼽혔으며, 그 밖의 세무·규제 이슈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장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다국적기업의 관계사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 국가 간 소득과 세금 배분에 영향을 줌

그림 10. 국제 원격근무의 주요 세무·규제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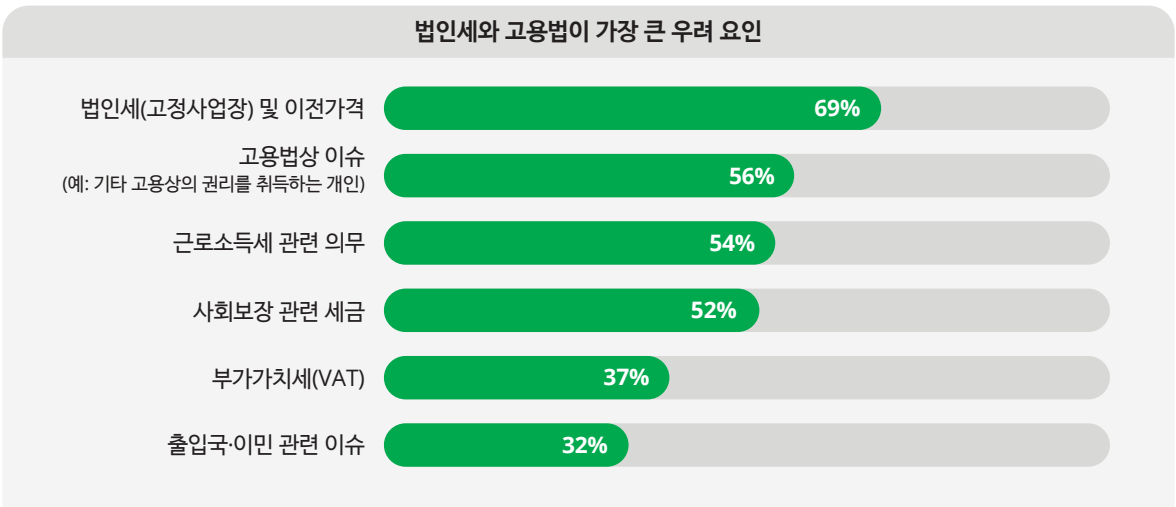

OECD 제도 개정의 효과와 한계

OECD의 최근 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5분의 1 이상은 모델조세조약 주석(Model Convention Commentary)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39%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근무와 관련해 소규모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다른 관할권에 직원을 둔 기업이 사업 활동 규모와 관련 세액이 제한적임에도 과도한 세무 컴플라이언스·행정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응답자들도 이번 개정으로 명확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적용 범위는 일부 상황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국제 원격근무를 위한 추가 개선 과제

국제 원격근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OECD가 어떤 분야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정 기간 관할권에 체류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27%). 이어 제한적인 이익만 발생하는 소규모 또는 기술적 고정사업장이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22%, 고용주 면제 프로그램(employer waiver program)*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

* 고용주 면제 프로그램(employer waiver program):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의 원천징수 등 일부 세무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다변화되는 글로벌 인력 운영모델

이번 서베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 전략을 재검토하고,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원격근무를 포함한 국경 간 인력 이동에 대한 접근방식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인력 활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장·단기 해외파견을 포함한 전통적인 글로벌 인력 운영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고용주가 주도하고, 일부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 인력 운영 방식은 세무·법률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사업 환경과 전략에 적합한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림 11. 기업들이 활용하는 국경 간 근무 및 인력 배치 모델 (전통적 인력 이동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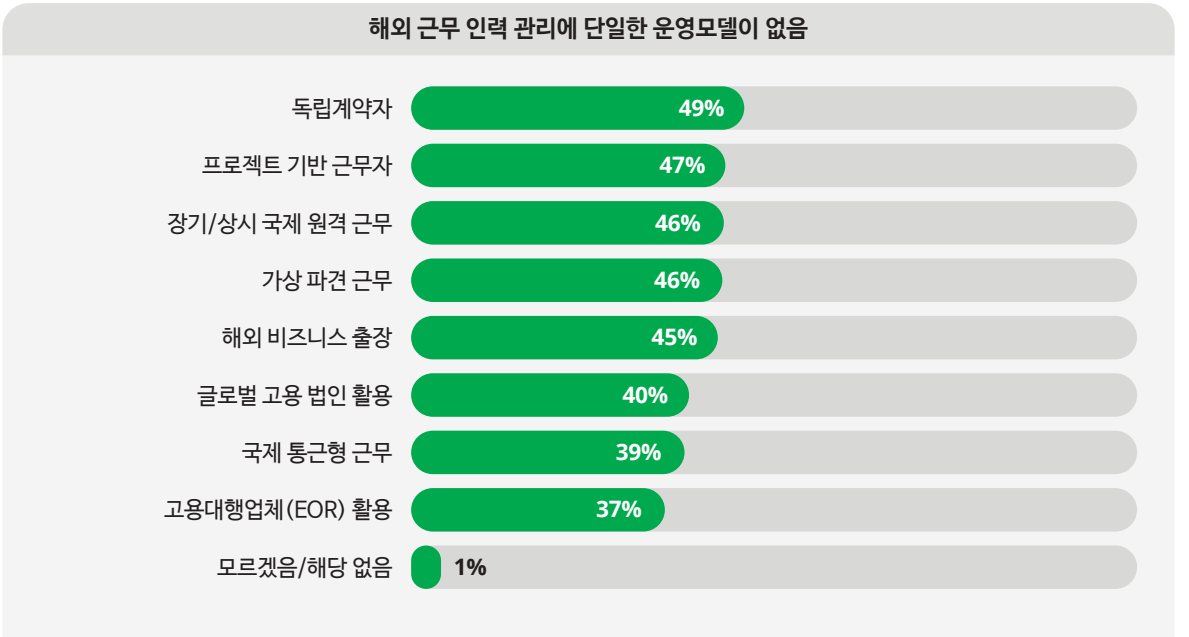

그림 12.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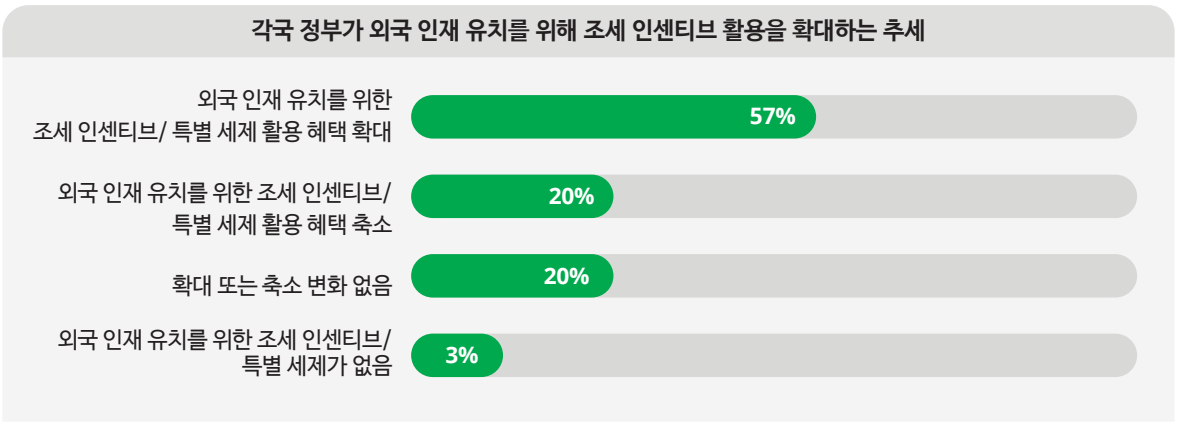

> 국경 간 인력 이동과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과세권 배분 규정이 OECD를 중심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보다 넓게 보면, 국경 간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세무 규정이 더욱 간소화되고 사회보장 관련 제도와도 정합성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는 인재 유치와 유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피트 베르스베이버르 (Piet Verswijver)
CHRO 플랫폼 리더, 딜로이트 벨기에

04. 국제조세 개혁

지난 1년간 국제조세 개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은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에 대한 협상과 합의였다. 이 패키지는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글로벌최저한세의 글로벌 이행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제도 개편안이다.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OECD/G20가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 및 이행 부담 완화 조치 확대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업과 세무당국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적용면제 및 이행 부담 완화 조치의 도입이었다.

새롭게 합의된 조치는 간이 실효세율 적용면제(Simplified Effective Tax Rate Safe Harbour),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ltimate Parent Entity Safe Harbour),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Side-by-Side Safe Harbour) 4가지이다. 기존의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는 1년 연장됐다.

응답자의 약 80%는 자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이러한 적용면제 및 이행 부담 완화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번 개편에 따른 혜택이 광범위한 기업군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은 납세자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의무를 검토하는 데 일정 부분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각국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향후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과거 연도에 대해서도 세액 계산과 세무 보고·신고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고 이행해야 할 수 있다.
>
> **제프 쿠머** (Jeff Kummer)
> 매니징 디렉터, 워싱턴 내셔널 택스, 딜로이트 미국

[참고]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적용면제 및 이행 부담 완화 조치

구분	주요 내용
간이 실효세율 적용면제 Simplified Effective Tax Rate Safe Harbour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 여부를 판단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일정한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한 글로벌최저한세 추가 세부담을 완화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Ultimate Parent Entity Safe Harbour	일정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을 면제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 Side-by-Side Safe Harbour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적격 과세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적용을 면제

* 소득산입규칙(IIR): 해외 자회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규칙
**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 IIR만으로 추가 과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국가들이 그 세액을 나누어 과세하는 보완 규칙

출처: 재정경제부(2026), 조세재정연구원(2026)

글로벌최저한세 간소화와 컴플라이언스 부담

글로벌최저한세 컴플라이언스의 복잡성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조세정책 서베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핵심 주제이다. 2024년 이후 글로벌최저한세로 인해 세무 컴플라이언스 복잡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응답자의 47%가 글로벌최저한세로 복잡성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규정의 폐지로 일부 상쇄될 것이라 응답했다(47%). 하지만 올해는 일부 세무 컴플라이언스 영역의 복잡성은 증가하겠지만, 새로운 적용면제 및 이행 부담 완화 조치가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56%를 기록했다.

그림 13. 글로벌최저한세가 기업 세무 컴플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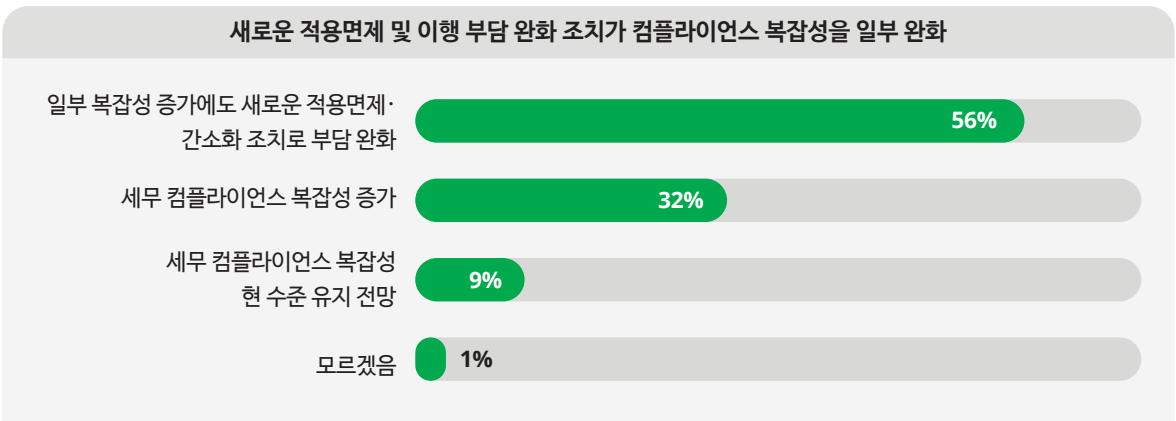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적인 간소화에 대한 요구도 여전히 강하다. 응답자의 41%는 향후 국제 공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적용면제 및 이행부담 완화 조치는 적어도 일정 부분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행 부담을 추가로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올해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이제 글로벌최저한세의 글로벌 정책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초점은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최초 신고가 핵심 과제이며, 세무당국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와 기타 현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
> **앨리슨 롭** (Alison Lobb)
> 파트너, 딜로이트 영국

글로벌최저한세로 발생하는 조세부담

글로벌최저한세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응답자의 88%가 글로벌최저한세로 인해 전체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추가 세부담을 예상한다는 것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실효성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이라는 OECD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56%는 세부담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당폭 증가를 예상한 응답자는 32%였다. 이는 많은 다국적기업에서 추가 세부담의 규모뿐 아니라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계산, 데이터 수집, 신고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실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복잡성,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실제 추가 세수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비례성 문제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의 영향을 반영해 글로벌최저한세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 추정치를 재산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추가 세수와 기업·세무당국의 컴플라이언스·행정 부담 간 균형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림 14. 글로벌최저한세가 전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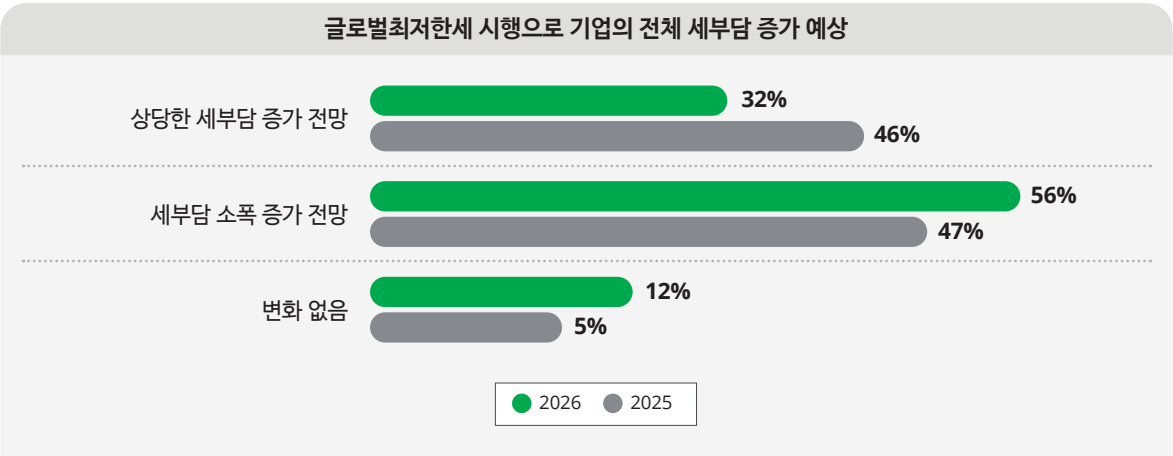

조세 인센티브의 역할

조세 인센티브는 투자 유치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이행단계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조세경쟁에서 조세 인센티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은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의 도입으로 기존 조세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센티브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15. 글로벌최저한세 하에서의 세제 인센티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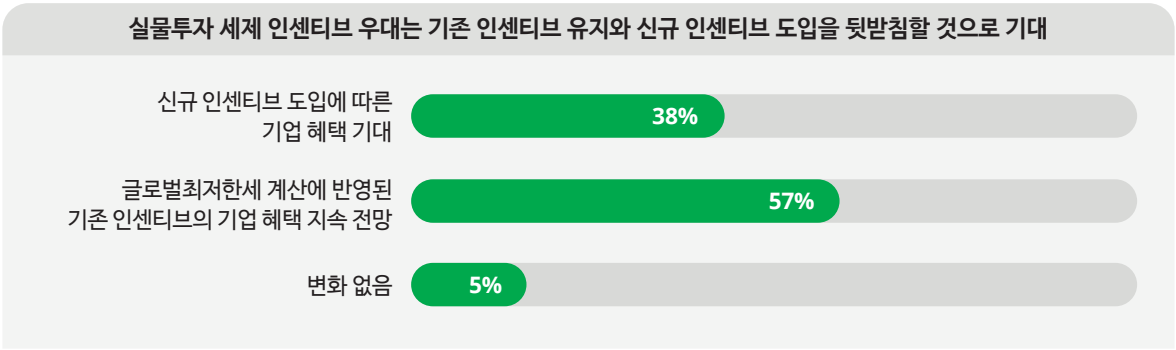

> 조세 인센티브는 아프리카 전역의 투자 의사결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예측 가능성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
> **올레보겡 라마틀호디** (Olebogeng Ramatlhodi)
> 아프리카 간접세 리더, 딜로이트 아프리카

05. 지속가능성

이번 서베이는 지속가능성 관련 조세정책의 두 가지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하나는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따른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정책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전면 적용이다.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미국의 정책 변화

미국에서는 OBBBA와 이후 발표된 미국 국세청·재무부의 지침으로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정책이 달라졌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베이 결과, 기업의 대응은 투자전략 변경부터 내부 구조조정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세액공제가 자사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그림 16. 미국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변화의 주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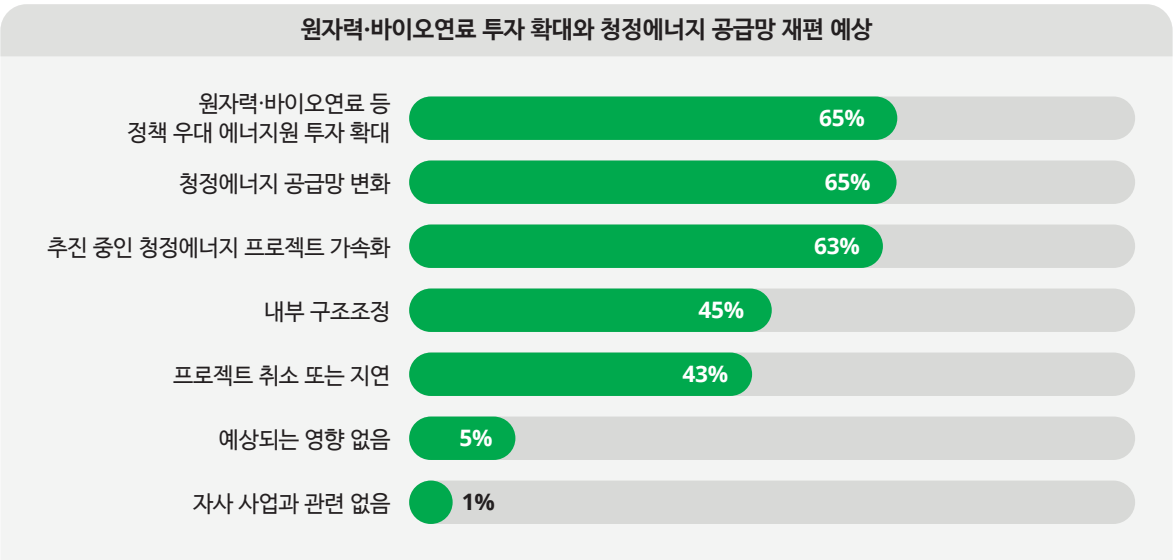

미국 정책당국이 다양한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 관련 정책은 향후에도 조정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번 서베이는 향후 1~2년 내 CBAM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가 규제 개정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EU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기업은 보다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의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U CBAM 준수 의무가 있는 기업의 대응 부담도 여전히 크다.

그림 17. EU CBAM에 따른 기업의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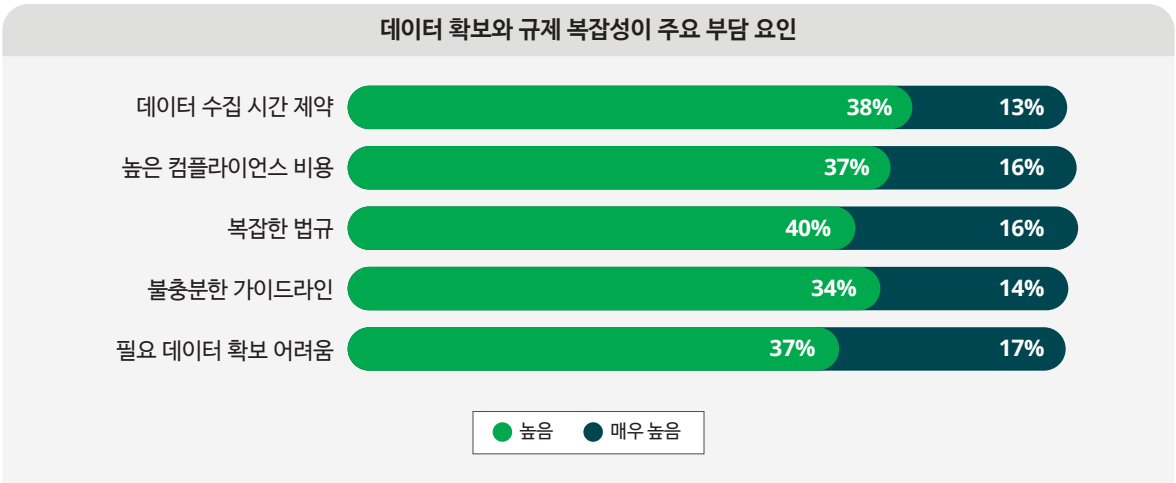

CBAM과 관련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조세 투명성과 세무 디지털화 등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 과제와도 매우 유사하다. 특히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제도적 복잡성이 공통된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활용

조세 인센티브와 보조금의 활용 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약 3분의 1의 기업은 이미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약 3분의 2는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지속가능성 관련 인센티브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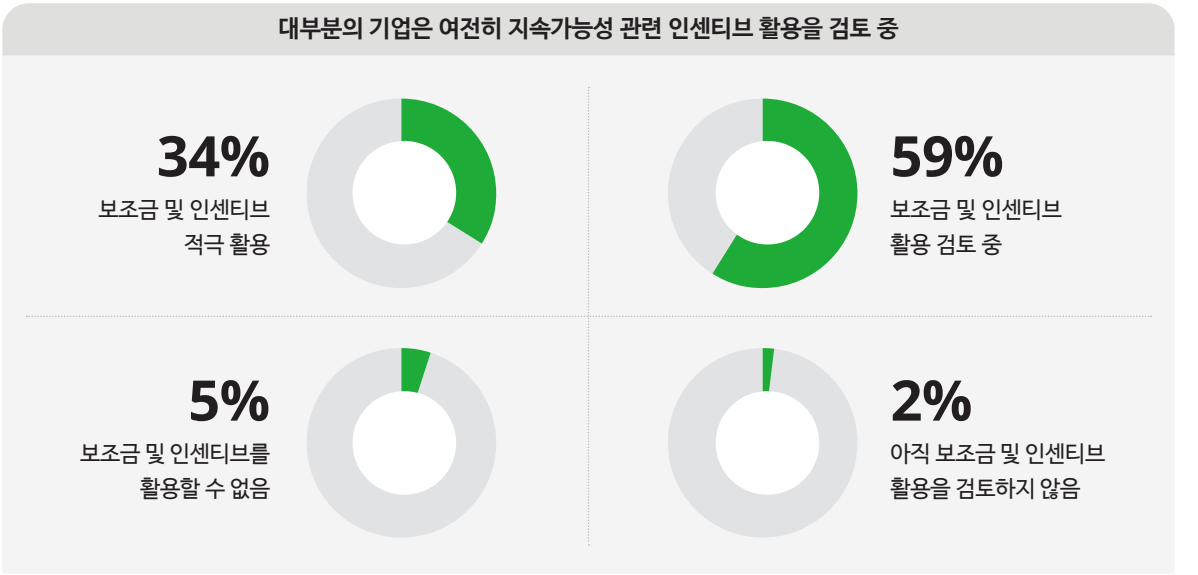

CBAM은 당분간 지속가능성 관련 컴플라이언스와 보고의 복잡성을 심화할 수 있다. 영국이 2027년 자체 CBAM을 도입하고 다른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함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EU CBAM과 새롭게 도입되는 각국의 제도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상충되는 요건과 이중의 컴플라이언스 부담, 잠재적인 분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탄소국경 규제체계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계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서 (David Arthur)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더, Tax & Legal, 딜로이트 캐나다

06. 통상정책 및 관세

통상·관세 체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이 등장하면서 정책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이번 서베이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새로운 여건에 맞춰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 기업이 이러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대응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림 19. 관세·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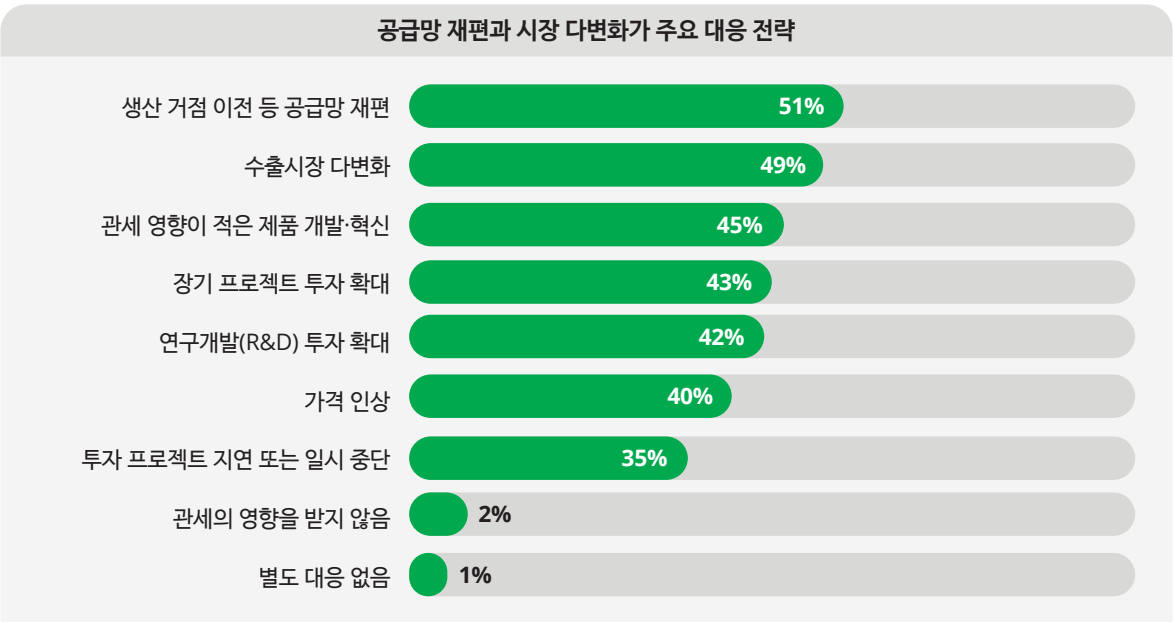

이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회복탄력성과 유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 변화하는 관세 환경과 통상정책은 관세의 영향이 기업 내 여러 기능과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기업은 회복탄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전략과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반 다타(Jivan Datta)
글로벌 공급망 리더, 딜로이트 미국

07. 결론

2026 글로벌 조세정책 서베이는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율 인상이나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글로벌 조세 체계 전반에 누적되는 복잡성임을 보여준다. 이번 서베이에서 다룬 모든 정책 주제에서 기업은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세무 컴플라이언스의 디지털화와 AI 활용 확대는 세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전만으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복잡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일부 영역에서는 기업들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전자세금계산서, 조세 투명성 공시 등 주요 영역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데이터·시스템·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남아 있다.

이번 서베이는 조세정책의 영향이 더 이상 세무 조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투자지역, 공급망, 인재 확보, 지속가능성, 기술 인프라에 관한 의사결정까지 조세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변화하는 제도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와 시스템, 프로세스, 내부통제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세무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글로벌 조세정책은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역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과 운영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08. 연구 개요

지역별 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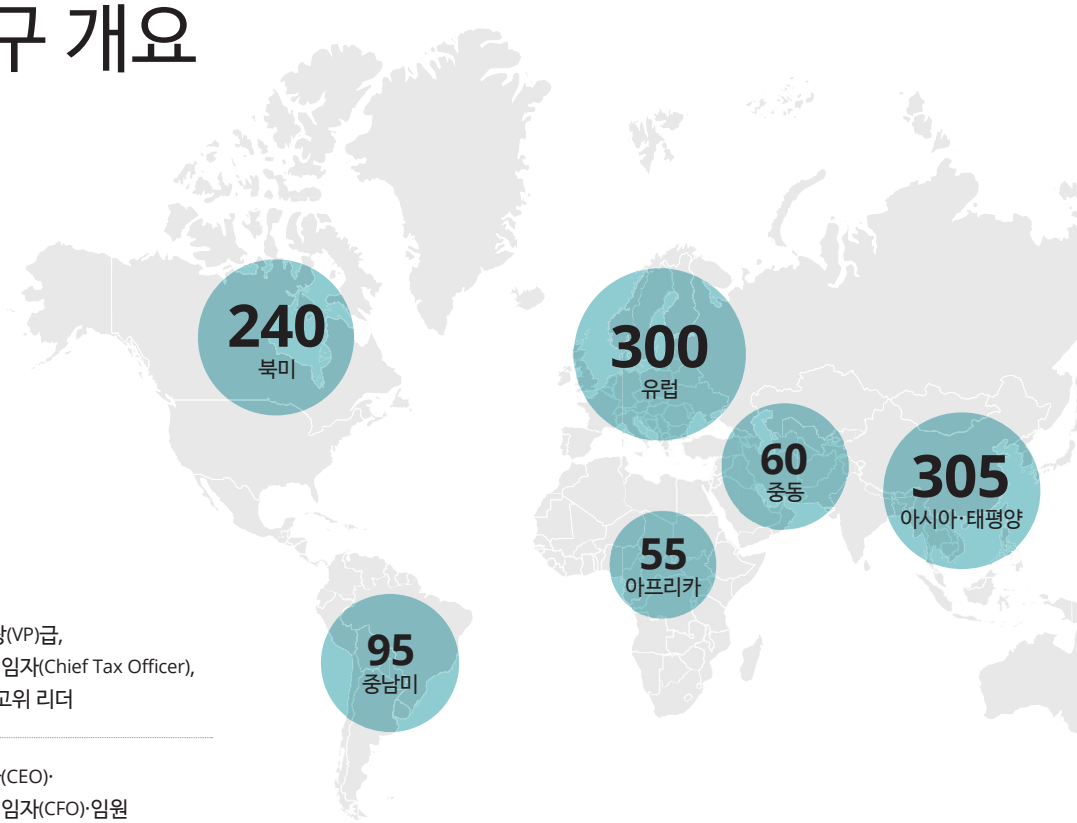

직급별 응답자 구성

65% 이사·부사장(VP)급, 최고세무책임자(Chief Tax Officer), 세무 부문 고위 리더

34%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임원

조직 내 세무·재무 의사결정 관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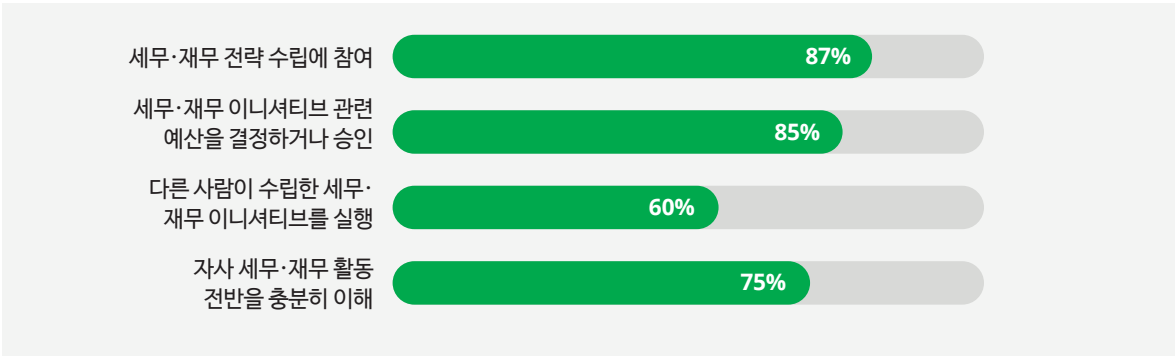

응답 기업 매출 규모(미화 기준)

10%	19%	23%	26%	22%
1억 달러 이상 ~ 7억 5천만 달러 미만	7억 5천만 달러 이상 ~ 20억 달러 미만	20억 달러 이상 ~ 100억 달러 미만	100억 달러 이상 ~ 500억 달러 미만	500억 달러 이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세무자문부문

세무자문부문은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부문은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 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 자문 등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지현 대표
세무자문부문 리더
02 6676 2434
jikim@deloitte.com

우승수 본부장
M&A & International Tax
02 6676 2452
sungwoo@deloitte.com

이용찬 그룹장
이전가격그룹
02 6676 2828
yongclee@deloitte.com

인영수 파트너
이전가격그룹
02 6676 2448
cin@deloitte.com

유정곤 그룹장
Customs and Global Tax
02 6676 2561
jyou@deloitte.com

최승웅 본부장
기업세무 1본부
02 6676 2517
seungchoi@deloitte.com

임홍남 본부장
기업세무 2본부
02 6676 2336
honglim@deloitte.com

이신호 그룹장
International Tax Leader
02 6676 2375
shinlee@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